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국제관광서비스과)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외래객을 유치·안내할 때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소지자'를 의무배치하여야 하나, 소수어권 자격자 부족으로 다변화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대비 관광통역안내사의 공급 부족 발생

2. 주요내용

가. 6개 언어 대상 한시자격 제도 도입(안 제51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제47조 별표 15에 따른 외국어 성적 소지자 및 제51조 별표16에 따른 외국어시험 면제자중(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일정시간 교육 이수시, '27년 4월부터 '29년 4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체를 면제 하고 한시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 하고자함

나. 필기시험 면제 요건 확대(안 별표 16 개정)

-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면제 요건 확대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2) 국내여행안내사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로 필기시험 면제 요건 동일하게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제출”을 “제출하고 제4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은 면제자의 이수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로서, 제47조제2항 별표 15에 따른 외국어시험 성적 소지자 및 제51조 별표 16에 따른 외국어시험 면제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2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발급되는 임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 제 대 상 및 면 제 과 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u>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u>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바. <u>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u>
2. 국내여행안내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u>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u>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接客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시험의 면제) ①·② (생략)	제51조(시험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제출하고 제4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은 면제자의 이수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
<신 설>	④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로서, 제47조 별표 15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소지자 및 제51조 별표 16에 따른 외국어 시험 면제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2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발급되는 임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